

# 石油類價格政策의 転換方向



尹 萬 鎬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石油類價格의 構造分析
  - 1. 段階別 價格形成過程
  - 2. 工場渡價格의 決定要因
- III. 石油類價格의 國際比較
  - 1. 價格政策比較
  - 2. 國別價格比較
  - 3. 國內 價格水準의 評價
- IV. 石油類價格政策의 転換方向
  - 1. 油價自律化實施의 妥當性
  - 2. 油價自律化實施에 따른 難題
  - 3. 合理的인 價格政策方向

## I. 問題의 提起

石油類價格 引上이 国内物価 및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이 多大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産業聯閥分析에 依하여 油價引上이 物価에 波及하는 程度를 보아도 알수 있거니와, 70年代 以后 示顯된 우리 나라의 急激한 物価上昇 要因이 主로 油價引上과 換率引上이었다는 여러 가지 計量的 모델의 結果가 이를 立證하고 있다.

石油類價格 引上의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은 主要 産業에 對한 エネ지費用比重分析에 依하여 把握할 수 있다. 즉 主要 産業에 對한 生産費中 エネ지費用

比重을 살펴보면, 製造業 平均值가 6~7% 水準이고 特히 油類費用 比重이 全体의 5% 程度를 占有하고 있다. 이같이 높은 油類費用 比重으로 말미암아 石油類價格 引上은 企業의 コスト上昇과 直結되고, 나아가서는 企業의 國際競爭力を 弱化시키는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

한편 石油類價格은 70年代 以后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因하여 빈번하게大幅引上되었으며, 이는 結局 石油消費國에게 深刻한 經濟的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国家들은 石油類價格에 對한 規制나 行政指導를 實施하여 왔고, 政府와 精済公社는 매우 特別한(?) 関係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類價格에 對한 政府의 規制는 公開市場의 原油價格에 對한 予想치 못한 悪影響의 要因들을 内包하고 있다. 石油類價格 規制와 第1.2次 石油波動時 国家別 影響의 程度를 比較하여 보면, 石油類價格이 크게 規制를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즉 西独, 프랑스, 英国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等이 石油危機의 衝擊을 効果的으로 克服해 낸 国家들로 評価받고 있다. ((表-1)参照)

이러한 観點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油價制度는 政府의 完全 規制 下에서 運用되고 있기 때문에 價格統制에 對한 非意図的인 不均衡(油價歪曲, 需給不均衡等)이나 非効率性(引上衝擊의 深化)의 問題가 더욱 起起되거나 않을까 하는 憂慮를 갖게 하고 있다. 이에 副応하여 最近 政府에서는 自律的인 油

〈表-1〉

第 1.2 次 石油波動의 影響比較

(단위 : %)

		年 度	美 国	英 国	프 랑 스	西 独	日 本	韓 国
實 質 成 長 率	1 次	1974	△ 1.3	△ 1.8	3.3	0.5	0.0	8.0
	2 次	1975	△ 1.0	△ 1.7	0.3	△ 2.1	1.4	7.1
消 費 者 物 價 上 升 率	1 次	1974	2.3	1.5	3.3	4.5	5.9	6.4
	2 次	1980	△0.75	△ 2.2	1.7	1.7	5.0	△ 5.7
	1 次	1974	11.0	16.0	13.7	7.0	24.5	24.3
	2 次	1975	9.1	24.2	11.8	6.0	11.8	25.3
	1 次	1979	8.9	12.2	10.9	3.9	3.1	18.3
	2 次	1980	10.5	15.5	13.7	5.2	6.2	34.6

類価格決定方式 즉 油価自律화의 早速한 施行을 慎重하게 推進하고 있는 中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国内石油類価格의 構造를 油価制度의 側面에서 考察하고 国内石油価格政策 및 価格水準을 外国의 그것과 比較·検討한 後 現行石油類価格政策의 転換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 II. 石油類価格의 構造分析

### 1. 段階別 価格形成過程

国内石油類製品의 価格은 政府가 告示하는 最高販売価格의 範圍안에서 自由로운 市場価格이 形成될 수 있도록 制度化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로 石油販売市場에서 来되고 있는 価格을 보면, 国内5個精油會社 모두 最高販売価格과 同一한 価格으로 販売하고 있어 過去의 告示価格制度와 別로 다를 것이 없다.

石油類의 価格形成過程을 보면, 石油類価格은 工場渡価格과 함께 流通段階에 따라서 精油會社 販売価格, 代理店価格, 注油所価格 等으로 区分된다. 따라서 消費者価格은 工場渡価格에다 輸送費, 代理店 및 注油所의 마진, 그리고 石油類稅(特別消費稅 + 附加価値稅)를 合하여 決定된다. 主要 oil種別로 消費者価格을 分析하여 보면, 撥発油의 경우, 石油類稅의 比重이 57.1%, 輸送費 및 마진이 占有하는 比重이 6%를 나타내고 있고, 輕油의 경우, 石油類稅의 比重은 13.8%, 輸送費 및 마진이 차지하는 比重은 10.3%를 記録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最終 消費者価格에서 큰 部分을 차지

하고 있는 油種別 稅率은 政府의 石油需給政策과 稅收目的에 따라서 決定되고 있다. 特히 油種別 差別課稅는 石油製品需給構造를 政府가 意圖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重要한 手段이 되어 왔다. 즉 撥發油 편중의 消費構造를 改善하고 車輛의 디젤化를 促進키 為했던 60年代 初에는 撥發油稅가 300%까지 引上되었던 것이다. 現在도 政府는 에너지 節約 및 石油類需給 安定 等을 위하여 撥發油에는 130% 그리고 輕油에는 7%의 特別消費稅를 각各 賦課하고 있다.

### 2. 工場渡価格의 決定要因

一般的으로 工產品의 工場渡価格은 原材料費用에다 原材料를 製品으로 生產하는데 所要되는 経費 즉 生產附帶費를 合하여 決定되는 것이 常例이다. 石油類製品의 工場渡価格도 그 構成項目을 크게 分類하여 보면, 原油代와 精製費用으로 区分할 수 있

〈表-2〉 主要 oil種別 価格形成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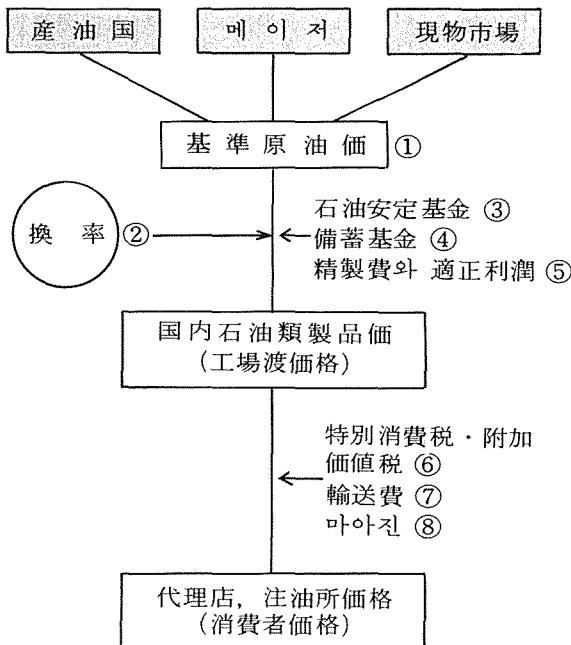
(单位 : 원 / ℓ)

	工場度価格	石油類稅	流通構造	消費者価格
高級撗發油	391.64 (36.9)	605.16 (57.1)	63.2 (6.0)	1,060 (100.0)
普通撗發油	272.78 (36.9)	423.3 (57.1)	43.92 (6.0)	740 (100.0)
輕 油	211.25 (75.9)	38.33 (13.8)	28.42 (10.3)	278 (100.0)
프로판	569.86 (69.7)	61.21 (7.5)	186.93 (22.8)	818 (100.0)

註 : 1. 石油類稅는 附加価値稅와 特別消費稅의 合計임  
流通構造는 輸送費와 流通段階別마진의 合計임  
2. 価格은 1982.3.11 現在 基準임.

다. 그러나 石油類価格은 政府의 石油価格政策에 依하여 統制되고 決定되어 왔기 때문에 構成項目이 多岐化되어 있고, 原油代와 精製費用의 算出基準도 油価調整時마다 政府에 依하여 設定되어 왔다.

〈그림-1〉 国内石油類 価格 決定의 諸要因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石油類 工場渡価格 決定의 諸要因은 첫째 여러 가지 方法에 依하여 導入되고 있는 原油의 基準原油価, 둘째, 石油事業法에 依拠하여 徵収하도록 되어 있는 石油安定基金 및 備蓄基金, 세째, 달러貨를 원貨로 換算하는 過程에서 関係되는 換率 等 原油代閏聯費用과 네째, 精製費, 다섯째, 適正利潤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工場渡価格에다前述한 바와 같은 流通段階別 石油類稅, 輸送費, 마진 等이 附加되어 消費者 価格이 形成되는 것이다.

그런데 石油類価格 決定의 諸要因은 ①基準原油価에서 ⑧마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要因이 政府에 依하여 決定되어져 왔고 ⑤精製費와 適正利潤의 決定마저도 政府가 主管함으로써 現行 石油類 価格構造는 個別精油会社의 經營合理화나 原価節減 等의 余地가 그다지 많지 않은 政府主導型 価格体系임을 反映하고 있다.

### (1) 基準原油価와 安定基金運用

油價調整時마다 工場渡価格에서 原油代閏聯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은 거의 90%를 上廻하고 있다. 또한 原油代閏聯費用의 大部分은 原油価와 安定基金으로 構成되어 있어 基準原油価의 設定과 安定基金의 運用이 石油類価格 变動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政府는 79年부터 基準原油価의 設定과 安定基金의 運用으로 原油費의 平準化 政策을 實施하여 왔다. 왜냐하면 79年初부터 世界原油価格이 多元化되어 各 精油會社마다 導入原油価의 差異가 크게 發生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는 国內原油需給 및 価格安定과 併변한 国内油價調整에서 오는 国民經濟에의 衝擊을 緩和시키기 为하여 最小限原油価部門에 있어서만은 各 精油會社別로 差異가 發生하지 않도록 한다는 方針 下에 基準原油価를 設定하고, 이를 为한 制度的 装置로서 安定基金制度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原油価 平準化政策은 79年 7·10油價引上措置에서부터 實施되기 始作하여 82. 3. 11原油價平準化政策을 廃止할 때까지 7차례에 걸쳐 反映되었는데, 每 引上時期마다 具體的인 運用方法이 变化되어 왔음이 特記할 만한 事實이다.

우선 基準原油価는 79年에는 原油導入複合單価에 原油価引上予想分을 追加하여 策定되었고, 80年 8·24油價引上時에는 原油導入複合單価로 变更되었으며, 81年 4·19油價引上時 다시 最低価 原油導入社인 湖南精油의 平均原油導入価가 基準原油価로 策定되었다. 그러나 國際原油價格이 単一化된 以后인 82年 3·11油價調整時 다시 原油導入複合單価로 그基準이 再設定되었다.

安定基金의 徵収方法도 79年에는, 基準原油価에서 精油會社別 導入單価를 差減한 残額을 安定基金으로 徵収하였으나, 80年 8·24油價引上時 從前의 差額安定基金과는 別途로 定額安定基金을 배령當 1달러씩 追加徵収함으로써 계속적인 換率上昇 等에 対処하도록 하였다. 80年 11·29 油價引上時에는 定額基金이 배령當 1달러에서 1.5달러로 引上調整되었고, 81年 4·19油價引上時에는 差額安定基金이 廃止되고, 定額安定基金만을 배령當 3.5달러 徵収하는 것으로 運用方法을 一元化하였다. 그러다가

〈表-3〉

基準原油価と 安定基金制度の 变遷

(単位：달러/배럴)

	'79. 7. 10	'80. 1. 29	8. 24	11. 19	'81. 4. 19	11. 29	82. 3. 11
基準原油価	23.5	28.8	30.58	31.97	31.44	32.92	32.77
	原油導入複合単価 + 上昇予想値	"	原油導入 複合単価	"	最低価 原油導入	"	原油導入 複合単価
安定基金	基準原油価 -個別導入単価 差額を微収	" 差額定期金	差額定期金 + 定期金 (1달러/배럴)	差額 + 定期 (1.5달러)	定期金 (3.5달러) 으로一元化	定期 2.3달러	定期 0.7달러
	差額 微 収	同 時 微 収	同 時 微 収	定期 微 収	定期 微 収	定期 微 収	原油 価 平準化廃止

原油価平準化政策을 废止한 82年 3·11 油価調整 때에는 그 동안 安定基金의 主用途였던 高価差額補填等 安定基金의 用途를 縮小함과 同時に 同基金을 배당 0.7달러로 下向調整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石油類 価格構造上 絶對의 比重을 占하고 있는 基準原油価設定 및 安定基金制度의 随時 变動的 運營으로 因하여 各 精油会社는 政府의 価格政策에 受動의이고 消極의 인 자세로 一貫해 왔음을 否認할 수 없다. 즉 低価原油導入을 위한 原油導入条件의 改善에 総力を 傾注하지 않았고, 自体의 備蓄 및 脱黃施設 等 施設改替와 精製費引下를 위한 努力에도 소홀하였다. 또한 高価의 輕質原油導入이 增大되어 外換負担을 加重시켰고, 需給構造 및 価格構造의 歪曲 現象의 一因이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더우기 自由価格政策이 아닌 統制価格政策으로 말미암아 引上時期 및 引上幅을 政府가 決定告示하는 関係로 国内製品価 引上 決定에 時差가 發生하고 있다. 이에 따라 78年 以後 国内製品価格은 海外原油価格에 比하여 約 1.6倍의 높은 比率로 引上되어 오고 있다. (表-4参照)

## (2) 基準精製費와 利潤

工場渡価格 決定의 또 다른 重要한 要因은 精製費와 利潤部門이다.前述한 바와 같이, 石油類製品複合単価는 基準原油価 + 基準精製費로 大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石油類価格 決定에 있어서 精製費와 利潤部門은 거의 無視되어져 왔거나反映이 되더라도 가장 낮은 水準에서 策定되어 왔다.

精製費部門을 보면, 過去의 基準精製費는 油公의

〈表-4〉 原油価와 国内製品価 引上推移 比較

(単位：달러/배럴, %)

	原油価引上率(A)	国内製品価引上率(B)	B/A
1978	12.93	3.88	367 ①(3.67)
1979	18.67	44.39	74.1 ③(9.5) ⑦ 59.0
1980	30.87	65.35	105.9 ⑧(14.72) ⑪ 12.56
1981	34.00	10.14	21.9 ④(15.0) ⑪ 6.0

註: 1. 原油価는 OPEC平均 公式価格임

2. ○内の 数자는 引上時期임.

精製費用이 基準이 되어 策定되어 왔다. 그理由는 油公의 會計帳簿만이 完備되었다는 것이었으나, 實際로는 油公의 精製費用이 가장 낮은 水準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政府는 精油3社(油公, 湖油, 京仁)의 精製費用을 加重平均(精油部門利益=0) 하여 基準精製費를 算定하였다. 이는 小規模企業인 極東石油의 特殊한 原価要因 그리고 新設会社인 双龍精油의 原価要因을 모두 除去하고자 한 意図인 것이다. 이와 같은 石油類製品価格에 对한 政府의 人為的 統制는 結局 精油業界의 缺損을 補填해야 하는 油価制度의 限界를 露呈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81年 4·19油価引上時 基準精製費는 精油5社의 加重平均精製費로大幅現実化되었다. 이로써 精油会社는 石油事業基金의 特別補填 等에 依存하지 않고, 運營效率性 提高를 通하여 適切한 報酬를 享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81年 4·19油価引上時 利潤概念이 油価構造上 公認될 때 까지만 하여도 油価決定時 利潤은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従来의 石油類価格은 油公 精油部門의 損益分岐点(Break-even Point)

nt), 또는 精油3社의 平均損益分岐点에서 決定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精油業에만 利潤을 不認定하는 產業間 不均衡 下에서 價格이 調整되어 왔다. 그러나 81年 4·19油價引上時 政府는 稅后 自己資本의 15% 以内의 利潤을 油價에 反映함으로써 그동안 歪曲되어 왔던 油價構造를 改善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結局 石油類價格構造는 市場經濟의 純粹原理에 依하여가 보다는 國家經濟의 重要機能을 擔當하는 精油產業에 對한 政府의 政策的 意志가 깊이 反映되어 形成되어졌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 III. 石油類價格의 國際比較

#### 1. 價格政策比較

石油類製品 價格은 國家별로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規制의 対象이 되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石油가 主宗 에너지源으로서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기 때문이고, 둘째, 海外輸入資源이며, 세째, 石油供給不足 時에 石油會社의 價格決定行態(Pricing Behavior)를 規制하여 石油會社의 暴利(Windfall Profit)를 制限하는데 그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石油類製品 價格政策을 國別로 比較評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危險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國家에 따라 特定의 規制가 隨時로 變動될 수도 있고, 政權이 交替되면 價格政策基調도 갑자기 転換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第2次 石油波動以后 國別 價格規制의 程度와 主要項目別 油價管理制度만을 相互 水平比較 하기로 한다.

〈表-5〉

價格政策의 國別比較

	第1 그룹 (直接規制)	第2 그룹 (間接規制)			第3 그룹 (市場價格)
		行政指導	連動化	一部製品規制	
国名	韓國, 台灣, 스웨덴	日本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美國, 英國, 西獨
統制油種	全品目	없음	揮發油, 燈油, 輕油, 병커 C油	揮發油, 燈油, 輕油, 병커 C油	없음
價格決定	最高販賣價格 告示價格 事前申告	現物市場와 連動		一部油種만 最高販賣價格	自由市場價格
價格体制	製品價格 一元化 去除除外, 類似商品	統制油種: 一元化 其他油種 多元化		統制油種: 一元化 其他油種 多元化	多元化
輸出入	統制	統制	自由化	自由化	自由化

〈表-5〉에서와 같이, 第1그룹에 屬하는 国家들은 石油價格에 對하여 政府의 直接規制를 받는 国家들로서 韓國, 台灣, 스웨덴 等이 여기에 該當된다. 이들 国家들은 政府가 石油類價格의 最高價를 決定하여 告示하고 精油會社間, 地域間의 石油類製品 價格을 一元化하고 있으며, 全品目에 對하여 輸出入을 統制하고 있다.

第2그룹은 間接規制를 하고 있는 国家들로서 規制形態에 따라 다시 세類型으로 区分할 수 있다. 첫째, 日本은 石油類價格에 對하여 通產省의 行政指導를 받고 있다. 價格調整은 原油價引上時마다 製品價格에 上昇要因이 바로 反映되는 價格現実化 政策을 採択하고 있고, 約 45個의 精油企業이 存立하여 競争市場의 性格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價格引上率이 政府에 事前申告되어야 하고 石油類製品의 輸出入이 統制되고 있다. 둘째, 其他間接規制의 国家들은 大部分 價格監視制度(Price Monitoring System)를 採択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影響力を 行使하고자 하는 特定製品에 對하여만 價格規制를 하고 있다. 이들 国家는 價格決定方式의 差異에 따라 現物市場價에 連動하여 製品價를 決定하고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와 民生用一部油種價格에 限하여 最高販賣價를 決定告示하고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等 두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第3그룹은 뚜렷한 石油類價格規制가 없는 国家로서 美國, 英國, 西獨이 이 範疇에 屬하며, 이들은 價格決定을 自由市場機能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石油價格에 関하여 精油業界에 政府立場을 밝힐 수 있으며, 石油供給이 逼迫해지면 이들 国家들이 第1그룹으로 移行하여 갈 수도 있다.

構成에서 高油価의 原因을

찾아보면, 石油事業基

金과 換率이 対象要因임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工場渡価格의 構成要因中

国内 導入原油価가 外國

에 比하여 特別히 高価인

것도 아니고, 国内精製費

用 또한 國際水準에 比하

여 높게 策定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基金制度를 運營하고 있지 않은 台湾과 같은 나라에 比하여 또한 自國 貸幣価値가 比較的 安定되어 있는 余他国家에 比하여 우리 나라는 工場渡価格決定에서 油価 追加引上要因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石油類稅도 高油価의 要因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石油製品에 対하여 特別消費稅, 附加価值稅, 그리고 防衛稅를 賦課하고 있는데, 특히 從價稅制를 採択하고 있기 때문에 從量稅의 日本이나 低率의 石油類物品稅만을 賦課하는 台湾에 比하여 消費者価格中 稅金이 차지하는 比重이 多少 높은 편이다.

한편 価格政策의 側面에서 高油価의 原因을 考察하여 보면, 現行 油価制度의 人為的 統制性과 硬直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民需用製品인 燈油와 石油化学用 主原料인 나프타에 対한 価格統制 및 特別配慮는 結局 他石油製品의 価格에 追加上升要因 또는 引下抑制要因으로 作用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価格決定이 自律的機能에 依存하지 않고, 政府主導型으로 硬直化되어 있어서 引上時差에 따른 上升要因 累積으로 말미암아 国内 油類 価格은 海外 原油価의 上昇率에 比하여 上向調整되고 있는 実情이다.

#### IV. 石油類価格政策의 改善方向

지금까지 石油類価格 構造分析과 石油類価格의 國際比較를 通하여 現行 石油類価格政策上의 諸問題를 把握하여 보았다. 이로써 政府主導의 価格統制와 精油產業에 対한 政府의 過度한介入은 精油會社의 經営合理化 努力의 滞害要因이 되었고, 國際石油情勢에 弹力的 能動的으로 対処할 수 있는 精油會社의 適応力 培養에 障碍要因이 되어 왔다고

(表-6) 石油類製品의 國際価格比較

(단위: 달러/배럴)

	韓國	台灣	日本	西獨	프랑스	英國
高級軽油	235.89	117.15	...	99.71	121.59	111.03
普通軽油	164.68	112.96	121.01	96.15	115.11	108.32
燈油	64.99	60.66	70.43	...	...	60.07
輕油	61.87	56.48	70.87	92.58	88.66	107.64
B-C油	46.13	31.80	41.67	36.29	37.07	36.17

註: 韓國은 現行価格, 其他国은 1982年 1月 価格基準임.

### 2. 國別価格比較

石油類製品価格을 國家別로 比較 檢討하여 볼 때, 国内 石油類価格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特徵으로 集約하여 說明할 수 있다. (表-6)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첫째, 捕發油의 価格이 매우 높다는 点, 둘째, 燈油, 輕油 等 経質油의 価格이 他국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다는 点, 그리고 세째, 병커-C油 等 重質油의 価格은 國際価格水準에 比하여 높은 水準에 있다는 点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製品別 価格体系는 國際価格水準에 比하여 輕質油는 低廉하고, 重質油는 高價로 弯曲된 価格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이로 因하여 石油製品의 國際交易上 価格差異로 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国内 石油製品 需給管理에 悪影響을 미치고 있다. 또한 輕質油 価格이 低廉하여 마진의 幅이 작기 때문에 精油會社는 向后增加될 輕質油 生產을 為하여 必須의 設備인 重質油分解裝置에 対한 投資를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병커-C油 等 產業用燃料인 国内 重質油価格은 外國의 価格水準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を 弱化시키는 重要 원凶이 되고 있다.

### 3. 国内価格水準의 評価

앞서 살펴본 國別価格比較를 通하여 볼 때, 国内 石油類価格水準은 燈油, 輕油 및 나프타 等一部 輕質油製品을 除外하고는 國際価格水準에 比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評価된다. 특히 競争相對國인 台湾에 比하여는 거의 모든 油種에 対하여 国内 価格이 높은 水準에 있는 実情이다. 이와같이 国内 石油類 価格이 높은 水準에 있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 □ 特別論壇 □

### 할 수 있다.

한편 政府에서도 市場經濟原理에 立脚한 油價管理体制를 確立하기 為하여 国内油價를 漸進의으로 自律화 할 計劃임을 表明하였고, 이의 具體的 実践을 위한 價格政策改善研究에 腹心하고 있다. 이미 政府는 81年 4·19 油價引上時 精製費의 現実化 및 利潤概念의 導入으로 精油會社에 對한 政府의 支援을 可及的 止揚하였으며, 82年 3·11油價引下措置時 原油價平準化 制度의 廢止와 安定基金의 縮小運營을 通하여 精油會社間의 自律競爭原理를 提高할 수 있는 油價自律化 基盤을 마련한 바 있다.

#### 1. 油價自律化實施의 妥當性

油價自律化 實施의 첫번째 妥當性은 우리 나라 經濟運用의 基本方向이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法으로 転換됨에 따라서 油價決定方式도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通하여 效率의으로 運用해 보고자 하는데에 있다.

둘째, 油價自律化는 產業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도모하기 為하여도 早速히 實施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他產業의 生產, 輸出入, 價格 等은 自由化되어 있는데 反하여 基礎原料產業인 精油產業이 政府主導 下에서 政策決定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產業間의 公正한 自由競爭이 어려워지고, 마침내는 產業間의 不均衡을 招來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째, 最近 國際原油市場의 安定 및 原油價의 単一化는 国内 油價自律化 實施를 為한 時宜適切한 背景이 되고 있다.

네째, 油價自律化는 精油產業이 지금까지의 放慢한 經營과 政府依存의 經營方式에서 脱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 實施의 妥當性이 強調되고 있다. 向後로는 政府의 特別產業部門에 對한 金融稅制等 政策支援이 可及的 縮小될 것이기 때문에 精油產業도 早速히 企業体质을 強化하여 自体 國際競爭力を 提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油價自律化實施에 따른 難題

그러나 油價自律化는 現行 政府告示價格의 油價体制에서 곧바로 實施되기는 어렵다. 오랜동안 政府主導型体制가 持続되어 왔기 때문에 油價自律化体制로의 移行에는 많은 시험착오와 充分한 時間이必要로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自由價格의 決定은 需要와 供給에 依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價格의 自

律化를 위하여는 需給自律化가 先行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油價自律化를 위하여는 다음의 몇가지 難題들이 先決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原油 및 石油類製品에 對한 輸入自由化가 先行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亂으로써 各 精油會社는 自社에 가장 有利한 方式으로 原油 및 石油類供給方式를 選擇하고 價格競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精油會社間의 原價差異가 縮小되어져야 하고 石油類製品의 輸入自由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国内石油類價格構造의 國際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第3次 石油波動과 같은 또 다른 石油危機에 對한 対応戰略—즉 政府次元에서의 備蓄이나 G—Gベース의 原油導入分에 對한 精油社別 比例配分 等—이 具體적으로 樹立되어져야 한다.

네째, 油價自律化 以后 石油類價格의 大幅引上 또는 大幅引下로 因하여 發生하는 エ너지의源 代替現象을 考慮하여야 한다. 즉 油價自律化는 他에너지源의 價格政策方向과도 軌를 같이 하여 實施되어져야 할 것이다.

#### 3. 合理的인 價格政策方向

上記 内容을 綜合하여 볼 때, 石油類價格政策은 綜合의이고 長期의인 觀點에서 慎重히 檢討되어져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石油類價格政策은 部門別對策(產業部門, 輸送部門, 家庭部門)과 エ너지源別價格對策(石炭, 가스, 原子力等)을 分析한 以後에 合理的인 綜合對策이 樹立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行 政府告示價格 体制에서 油價自律化 体制로 移行되어 가는 時期를 充分히 計劃하고 그동안 油價連動制의 實施 또는 價格規制 幅의 縮小等 諸方法을 通하여 石油類價格政策 改善을 위한 努力에 総力を 다하여야 할 것이다.

油價自律化의 實施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油價引上의 衝擊이 国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 하느냐」하는 方案의 하나로 考慮되어진 것이다. 이런 意味로 해석한다면, 石油類價格의 真正한 自律化를 위하여는 政府의 最少限의 規制가 向後로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英国, 西獨 等 市場價格에 依하여 石油類價格이 決定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石油供給 事情이 逼迫해지면 政府가 다시 石油類價格을 統制하고 있는 것이 그 代表의 例라고 하겠다. \*